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유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25일

발 의 자: 최유희, 강석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호연, 소영철,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8
명)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교육·학예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동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단 한 차례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북한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생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운영 성과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